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베트남

※본 자료는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현행 법제와는 상이할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을 알립니다.



1. 결제 및 환불 관련

1

1. 결제수단	2
1-1. 대금 지급 방법	2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2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3
2. 표시광고	3
2-1. 표시광고(정보제공)	3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3
3. 청약철회	4
3-1. 청약철회	4
3-2. 환불	4
4. 환불	4
4-1. 표준약관 환불	4
4-2. 표준약관 과오납금 환불	4
5. 미성년자 결제	4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4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결제관련)	4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5
5-4. 고지의 의무(계약 시)	5
5-5. 고지의 의무(게임물 결제 내역 관련)	5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
6-1. 전자문서 활용	6
6-2. 거래기록 보존	6
6-3. 조작 실수 방지	6
6-4. 전자적 대금 지급 신뢰확보	6
6-5. 사이버몰 신원 표시	7
6-6. 청약 확인	7
6-7. 휴업기간 업무처리	7
6-8. 결제한도	7
6-9. 추천 광고	7

1. 등급심의	9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사후)	9
1-2. 등급분류 주체	9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10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10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10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11
2. 등급분류 사후관리	11
2-1. 등급분류의 거부	11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11
2-3. 등급분류 효력	12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12
2-5. 등급의 조정	13
2-6. 등급분류의 취소	13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13
3. 확률형 아이템	14
3-1. 판매 가능 여부	14
3-2. 적용 대상	14
3-3. 준수 사항	14
3-4. 미 준수 시 페널티	14
3-5. 자율규제 존재 여부 및 세부내용	14
4. 광고 관련	14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14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6
1-1. 본인인증/ID 생성	16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16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개인정보 관련)	16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16
1-5. 미성년자 청약철회	16
1-6. 강제적 섣다운제	17
1-7. 선택적 섣다운제	17
1-8. 미성년자 정의	17
1-9. 미성년자보호법	17
1-10.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게임이용 관련)	18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20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20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20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20
2. 개인정보 처리	20
2-1. 개인정보 파기	20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20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21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21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21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21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21
3. 개인정보보호	22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22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22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22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보험	23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25
1-1. 게임법 유무	25
1-2. 게임 관련 규정	25
2. 경품 이벤트	25
2-1. 관련 법령	25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25
3-1. 국내 대리인 지정	25
3-2. 법인 설립 의무	25
3-3. 서버 설치 의무	26
4. 외국인 투자 제한	26
4-1. 외국인 투자대상 제외	26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26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26
5. 서비스 허가증	26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26



Ⅰ.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 지급 방법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20, 29번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베트남 내 결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함

이외, 결제를 지원하는 베트남 기업과 연계하여 정확한 결제정보를 저장해야 하며,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세부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 관련 법률 :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관리, 제공 및 사용 세부 정보(Detailing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online gaming services 24 /2014/TT-BTTTT)
- 부연 설명 :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관리, 제공 및 사용 세부 정보 제7조에 따라 가상 아이템, 가상화폐 및 게임 포인트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1) 가상 아이템, 가상화폐, 게임 포인트 생성 시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콘텐츠 및 비디오 게임 스크립트와 사업자 정기공시를 준수해야 함
 - 2) 사업자는 공개된 게임 규칙과 승인 받은 콘텐츠 및 비디오 게임 스크립트에 따라 가상 아이템, 가상화폐, 게임 포인트를 관리해야 함
 - 3) 가상 아이템, 가상화폐, 게임 포인트는 공시 문서에서 제시한 목적에 맞게 게임 환경 내에서만 사용해야 함. 가상 아이템, 가상화폐, 게임 포인트는 자산이 아니며, 게임 환경 외부에서 거래 가치를 갖는 금전이나 게임 카드, 쿠폰, 기타 아이템으로 역변환 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함

- 4) 이용자 간에 가상 아이템, 가상화폐, 게임 포인트를 거래할 수 없도록
해야 함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 관련 법률 : N/A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제34조에 따라 온라인 게임 운영자는 게임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고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
 - 1) 비디오 게임의 연령별 분류
 - 2) 각 비디오 게임의 규칙
 - 3) 비디오 게임 정보 및 활동 관리에 관한 규제
 - 4) 이용자 간 혹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불만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규칙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 관련 법률 : 광고에 대한 법률(Law on advertisement)
- 부연 설명 : 광고에 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서비스
수량, 품질, 가격, 특징, 디자인, 패키지, 브랜드명, 서비스 방식, 보증 기간
등)에 관하여 혼란을 야기하거나 부적절하게 광고 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 관련 법률 : 민법(Civil Code)
- 부연 설명 : 민법 제38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계약 철회가 가능함
 - 1) 피제안자가 제안을 수령하기 전이나 수령과 동시에 제안의 수정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경우
 - 2) 제안자가 제안이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했고, 그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한 경우

3-2. 환불

- 관련 법률 : N/A

4. 환불

4-1. 표준약관 환불

- 관련 법률 : N/A

4-2. 표준약관 과오납금 환불

- 관련 법률 : N/A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 관련 법률 : 민법(Civil Code)
- 부연 설명 : 민법 제21조에 따라 성인은 만 18세 이상임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 관련 법률 : 민법(Civil Code)
- 부연 설명 : 민법 제21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민사거래를 행할 시 아래의 원칙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해야 함

- 1)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 확립·이행됨
- 2)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 민사거래를 확립·이행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단, 연령군에 부합하는 일상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사거래는 제외됨
- 3)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는 스스로 민사거래를 확립·이행할 수 있음. 다만,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동산과 관련된 민사거래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기타 민사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20번에 따라 게임 카테고리 G1으로 규정된 게임물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1) 이름, 생년월일, 영구 주소지, 신분증 또는 여권 번호 및 발급일과 발급 장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있을 경우)을 포함하는 이용자의 정보 전체를 저장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함. 이외, 신분증 또는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그러한 등록에 대해 책임져야 함

5-4. 고지의 의무(계약시)

- 관련 법률 : 민법(Civil Code)
- 부연 설명 :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참고

5-5. 고지의 의무(게임물 결제 내역 관련)

- 관련 법률 : N/A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 관련 법률 : N/A

6-2. 거래기록 보존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20번에 따라 게임 카테고리 G1으로 규정된 게임물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1) 비디오 게임의 결제 시스템은 베트남 내에 위치해야 하며, 결제를 지원하는 베트남 기업들과 연계하여 업데이트 및 정보 저장이 정확하게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게임 이용자가 결제 계정의 세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6-3. 조작 실수 방지

- 관련 법률 : N/A

6-4. 전자적 대금 지급 신뢰확보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6-2. 거래기록 보존' 참고

6-5. 사이버몰 신원표시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 부연 설명 : ‘2-1. 표시광고(정보제공)’ 참고

6-6. 청약 확인

- 관련 법률 : N/A

6-7. 휴업기간 업무 처리

- 관련 법률 : N/A

6-8. 결제한도

- 관련 법률 : N/A

6-9. 추천 광고

- 관련 법률 : N/A

II. 등급분류

1. 등급심의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제31조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게임은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해외 사업 경우 베트남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게임 유통을 위한 라이선스를 베트남 정보통신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라이선스 구분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 1) 게임 서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호 작용하는 비디오 게임(G1)
- 2) 이용자와 게임 서버 간의 상호 작용만 있는 비디오 게임(G2)
- 3) 이용자와 게임 서버 간의 상호 작용 없이 다수의 이용자가 상호 작용하는 비디오 게임(G3)
- 4) 이용자 간 혹은 이용자와 게임 서버 간의 상호 작용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비디오 게임(G4)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31번에 따라 부여 받은 라이선스는 최대 1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

1-2. 등급분류 주체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 참고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 부연 설명 :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 참고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17번에 따라 비디오 게임 연령 등급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 1) 성인(만 18세 이상, 18+로 표기)에게 적합한 비디오 게임은 무장 전투를 포함하나, 포르노 행위나 소리, 이미지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게임
 - 2) 청소년(만 12세 이상, 12+로 표기)에게 적합한 비디오 게임은 무장 전투를 포함하되 근접한 그래픽 무기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 효과음을 제한 및 완화하며, 노출 행위나 이미지, 소리가 없고 신체의 민감 부위를 클로즈업하지 않는 게임
 - 3) 전 연령에 적합한 비디오 게임(00+로 표기)은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으로 무장 전투, 유령이나 끔찍하고 폭력적인 이미지 및 소리, 노출 행위, 이미지, 소리를 포함하지 않고 신체의 민감 부위를 클로즈업하지 않는 게임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1) 게임 출시 허가증 발급신청서
 - 2) 사업자 등록증
 - 3) 게임 서비스 사업 운영 담당자의 이력서
 - 4) 합법 도메인 이름 증명서
 - 5) 게임 서비스 제공안(스토리, 캐릭터 시스템, 임무, 결제 형식, 게임 유통채널, 소개 영상 등)

1-6. 등급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 관련 법률 : N/A

2. 등급분류 사후관리

2-1. 등급분류의 거부

- 관련 법률 : N/A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사항, 방법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제17번 및 20번에 따라 이용자가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 광고창과 장치 화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비디오 게임 연령 등급을 표시해야 함. 또한 G1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또는 소개 영상에 비디오 게임의 연령 등급을 일관되게 표시하고, “하루 180분 이상 게임을 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임 포럼 및 장치 화면에 잘 보이게 배치해야 함

2-3. 등급분류 효력

- 관련 법률 : 우편 서비스, 통신, 무선 주파수, 정보 기술 및 전자 거래에 대한 규정에 대한 행정 위반에 대한 벌칙(Penalties for administrative violations against regulations on postal services, telecommunications, radio frequenc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electronic transactions)
- 부연 설명 : 우편 서비스, 통신, 무선 주파수, 정보 기술 및 전자 거래에 대한 규정에 대한 행정 위반에 대한 벌칙 제104조에 따라 아래 위반 행위에 대해 VND 20,000,000~30,000,000의 벌금을 부과 함
 - 1)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온라인 게임의 연령 등급을 준수하지 않고, 광고 프로그램과 사업자의 웹사이트, 각 온라인 게임 상에 이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 행위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27번 및 34번에 따라 G1 라이선스를 승인 받은 경우, 아래 각 호에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G1 라이선스를 재신청 해야 함
 - 1) 비디오 게임명을 변경한 경우
 - 2)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게임 스크립트 수정을 포함하여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한 경우

이외, G2~G4 게임의 경우, 사업자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변경한 경우 정보통신부 산하 라디오, TV 및 전자정보부에 추가 통지를 송부해야 함

- 1) 게임명

- 2) 비디오 게임의 연령별 분류
- 3) 제공 방법 및 범위 관련 세부 정보
 - 도메인명, IP주소(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일 경우),
유통채널(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게임일 경우)

2-5. 등급의 조정

- 관련 법률 : N/A

2-6. 등급분류의 취소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 포함될 경우 제31조에 따라 등급이 취소 될 수 있음
 - 1) 징그럽거나 잔인하거나 살인 행위(음향, 영상)
 - 2) 폭력성, 짐승 및 신체의 일부분을 절단하고 떨어뜨리는 행동, 징그러운 피 영상
 - 3) 음란, 부도덕, 저속한 행위, 전통 도덕, 문화, 민족의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영상 및 음향
 - 4) 전통 역사 파괴 및 왜곡
 - 5) 영토 보존 및 주권 위반
 - 6) 자살, 마약, 음주, 흡연, 테러 관련 행동 및 음향
 - 7) 아동 및 여성 거래, 학대, 침해 행동
 - 8)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저항
 - 9) 전쟁 및 테러 선동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

- 관련 법률 : N/A

3. 확률형 아이템

3-1. 판매 가능 여부

- 관련 법률 : N/A

3-2. 적용 대상

- 관련 법률 : N/A

3-3. 준수 사항

- 관련 법률 : N/A

4. 광고관련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표기 관련 표시의무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사항, 방법' 참고

Ⅲ.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ID 생성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참고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참고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개인정보 관련)

- 관련 법률 : N/A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관련 법률 : N/A

1-5. 미성년자 청약철회

- 관련 법률 : 민법(Civil Code)
- 부연 설명 : 민법 제125조에 따라 미성년자, 금치산자, 인지 기능 및 행동 제어가 제한적인 사람으로 법적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민사 거래를 확립·이행한 경우, 법원은 그 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

할 시 해당 거래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함

해당 거래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거나 법정대리인이 확립·이행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한 경우라도, 만 6세 미만 아동 또는 금치산자의 일상생활 수요를 위한 것이라면 해당 민간 거래를 무효화해서는 안 됨

1-6. 강제적 섯다운제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 20번에 따라 G1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아래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 1) 0시부터 24시까지 이용 시간을 관리하고, 만 18세 미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G1 비디오 게임의 총 이용 시간은 1일 24시간 중 18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1-7. 선택적 섯다운제

- 관련 법률 : N/A

1-8. 미성년자 정의

- 관련 법률 : 민법(Civil Code)
- 부연 설명 :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참고

1-9. 미성년자보호법

- 관련 법률 : N/A

1-10.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가이드(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참고

Ⅳ.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 관련 법률 :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information Security)
- 부연 설명 : 사이버보안법 제16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수집, 공개,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 사항임.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불가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 관련 법률 :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information Security)
- 부연 설명 :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참고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위탁 업체 계약방법)

- 관련 법률 :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information Security)
- 부연 설명 :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참고

2. 개인정보 처리

2-1. 개인정보 파기

- 관련 법률 :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information Security)
- 부연 설명 : 사이버보안법 18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개인이 수집,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갱신, 변경,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이외, 저장된 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명시함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 관련 법률 : N/A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 관련 법률 :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information Security)
- 부연 설명 :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참고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관련 법률 :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information Security)
- 부연 설명 :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참고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 관련 법률 : N/A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 관련 법률 :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information Security)
- 부연 설명 :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참고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 관련 법률 : 광고에 대한 법률(Law on advertisement)
- 부연 설명 : 광고에 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 1) 단체 및 개인은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문자메시지와 홍보 메일을 발송할 수 있음
 - 2) 전자정보통신 사업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당사 서비스에 관한 문자메시지 및 홍보 메일을 발송할 수 있음. 수신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24시간 이내에 3건 이상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3건 이상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금지됨
 - 3) 광고 단체 및 개인은 수신자의 광고 거부의를 확인해야 하며,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즉시 홍보 메일과 메시지의 전송을 중단해야 함. 수신자의 거부 통지 건에

대해 과금 하여서는 안 됨

3. 개인정보보호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 관련 법률 :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information Security)
- 부연 설명 : 사이버보안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 1)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개인이 수집,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이에 따라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사용하는 방법, 범위, 위치 및 목적으로 알려줘야 함. 또한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전송할 시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함
 - 2) 시정권(정정권 및 삭제권)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개인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장된 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3) 접근권
 - 정보처리자가 수집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함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 관련 법률 : N/A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 관련 법률 :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Law on Information Technology)
- 부연 설명 :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개인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보험

- 관련 법률 : N/A

V. 기타 분류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 관련 법률 : N/A

1-2. 게임 관련 규정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관리, 제공 및 사용 세부 정보 (Detailing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online gaming services 24 /2014/TT-BTTTT)

2. 경품 이벤트

2-1. 관련 법령

- 관련 법률 : N/A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 관련 법률 : N/A

3-2. 법인 설립 의무

- 관련 법률 : 투자에 관한 법률(Investment Law 67/2014/QH13), WTO 협약
- 부연 설명 : 투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WTO 협약에 따라 베트남은 해외 게임 개발 회사가 국가 간 공급 방식을 통해 게임을 출시하고 비즈니스(게임 판매 및 수익 창출)를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이에, 외국 기업은 현지 라이선스 법인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라이선스 파트너와 상업 약정(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이하 BCC))을 체결해야 함

이외, 합작 법인 또는 BCC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49%로 제한 함

3-3. 서버 설치 의무

- 관련 법률 : N/A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 관련 법률 : 투자에 관한 법률(Investment law Law 67/2014/QH13)
- 부연 설명 : ‘3-2. 법인 설립 의무’ 참고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 관련 법률 : N/A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 관련 법률 : N/A

5. 서비스 허가증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 관련 법률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 부연 설명 :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 참고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베트남



한국게임산업협회 Korea Association of Game Industry

(0625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4 청보빌딩 7, 8F

Tel. 02.6203.1900 Fax. 02.3477.2708 E-mail. k-games@gamek.or.kr